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57호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02-970-9082

제정 2004. 2.13.

개정 2004. 12. 24.

개정 2005. 10. 1.

개정 2007. 1. 22.

개정 2010. 8.30.

개정 2015. 9. 8.

개정 2016. 3. 7.

개정 2021. 12. 28.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에 따라 설립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30., 2015.9.8.〉

제2조(기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산학협력 관련 사업을 유

기적으로 통합·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8.>

제3조(사업) 산학협력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교에서 수행하는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통합·조정 관리 〈개정 2015.9.8.〉
- 2. 본교에서 수행하는 산학협력사업 및 국책사업의 행·재정 지원 〈개정 202 015.9.8.〉
- 3. 산학협력 계약체결 및 이행,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 관리 〈개정 2015.9.8.〉
- 4. 삭제 <2015.9.8.>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업으로서 본 교에 입주한 기업의 지원〈개정 2015.9.8.〉
- 6.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개정 2015.9.8.,2016.3.7.〉
- 7. 교외 연구비 지급 및 관리 <개정 2015.9.8.>
- 8. 부설연구소 운영 지원 <개정 2015.9.8.>
- 9. 산학(산·학·연·관) 협정 체결 및 관리 <개정 2015.9.8.>
- 10. 삭제 <2015.9.8.>
- 11. 산학명예교수 추천 〈개정 2015.9.8.〉<개정 2021.12.28.〉
- 12. 계약에 의한 학부, 학과 운영 지원<개정 2021.12.28.>
- 13.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및 관리
- 14. 〈삭제 2016.3.7.〉
- 1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지원 〈신설 2016.3.7.〉

16. 그 밖에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총장이 승인한 사업 〈개정 2015.9.8.,2016.3.7.〉

#### 제2장 조직

- 제4조(산학협력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개정 2016.3.7.>
  - ②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 ③ 단장은 본교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6.3.7.>
- 제4조의2(산학협력부단장) ① 단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복수의 부단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16.3.7.〉
  - ② 부단장은 본교 교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신설 2016.3.7.〉
- 제5조(산학협력단 직원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연구원 및 직원에게 본교의 교육, 연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8.〉
  - ③ 총장은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인원을 단장의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파견하거나 겸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하위조직) ①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위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하위조직의 구성 및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 제3장 회계

제7조(수입)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산학협력 계약에 의한 수입금
-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 4.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 5.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 6. 이자수입
- 7.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9.8.>

제8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 3. 본교의 시설·운영 지원비 <개정 2015.9.8.>
- 4. 산학협력단의 재원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 5. 학교기업의 운영비
- 6.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 7.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업무 수행경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업무수행 경비 〈개정 2015.9.8.〉
- 8. 그밖에 산학협력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9조(회계처리)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산학협

력단회계처리규칙 | 을 적용한다. ⟨개정 2015.9.8.⟩

②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 및 회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12.28.>

## 제4장 운영위원회

-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산학협력 단장, 산학협력부단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대학원 1명, 공과대학 2명, 정보통신대학 1명, 에너지 바이오대학 1명, 조형대학 1명, 인문사회대학 1명, 기술경영융합대학 1명 등을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면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 8.. 2016.3.7.〉
  - ③ 삭제
  -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부단장 또는 당연직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3.7.〉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 (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운영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 2. 산학협력단 정관 및 산학협력 관련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3.7.>
- 3.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 신청·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4. 교외연구비 및 간접비 관련 업무의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9.8.〉
- 5. 삭제 <2015.9.8.>
- 6. 산학(산·학·연·관) 협정 체결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8.>
- 7. 삭제 <2015.9.8.>
- 8. 삭제 <2021.12.28.>
- 9. 계약에 의한 학부, 학과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8.※개정 2021.12.28.〉
- 10.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8.〉
- 11. 〈삭제 2016.3.7.〉
- 12.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의 설립, 폐지,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9.8.〉
- 13. 산학협력단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7.〉
- 14.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6.3.7.〉
- 15. 그 밖에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 〈개정 2015.9.8.,2016.3.7.〉 제12조 (소집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산업대학교산학협력 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31호, 2010.8.30)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

부칙(제294호, 2015.9.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318호, 2016.3.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57호, 2021.1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